

# 2020년도 제1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20.(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권헌영,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3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29건(안전번호 제2020-73052호~7459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73052호~73060호는 블로거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73061호~73088호는 블로거가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보다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법해석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전번호 제2020-73089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국외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음악 불법복제물을 URL 주소로 제공한 사안임. 게시물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불법복제물로 바로 연결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73799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증거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심의 요청되었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93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

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496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43844호~45339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개, 199개의 URL 정보는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부결하고, 나머지 대체사이트 13개, 1,297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13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게시자 아이디, 저작물명,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민원인 신고 내용, 8쪽의 민원인 회사명, 15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자 아이디, 저작물명,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민원인 신

고 내용, 민원인 회사명,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윌트디즈니컴퍼니', '마블스튜디오', '이십세기폭스', 'CGV 아트하우스', '위너브라더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주)엔케이컨텐츠', '(주)롯데엔터테인먼트', 'CJ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씨제이이엔엠(주)', '(주)누리픽처스', '(주)싸이더스', 'tvN'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02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 ▶'는 2020. 4. 5.부터 현재까지 일본 '○○○○'에서 방영 중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73052호~7306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대적으로 최신 콘텐츠를 무단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A 위원: 또한 저작권법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3052호~7306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3061호~73088호는 민원인의 신고를 기초로 보호원이 불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73061호~730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지난 심의에서 밝혔던 입장과 같이 본 건에 대한 시정권고를 부결하자는 의견이나, 전체위원회에 상정한 안전과 내용을 같이 하므로 본 건 역시 전체위원회 회부하여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저는 가결 의견임. 링크 설정 게시물은 그 불법복제물의 원천이 해외 서버에 있든 국내 서버에 있든 상관없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보호원은 행정력이 미치는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음. 불법복제물 원천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없더라도 해외 서버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임.  
 권리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국내 서버에 있는지 해외 서버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은 심각한 문제임. 이에 링크 설정 게시물이라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정권고를 해야 함. 링크 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도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못지않게 권리 보호를 위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이와 유사한 안전들이 전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링크 설



‘www’, 가수 ‘BTS’의 ‘www.bts.co.kr’임.

본 건 URL 주소 자체가 음악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 URL 주소 정도라면 직접 링크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물론 이에 대하여 URL 주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URL 주소를 선불리 저작권 침해 정보라고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7308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 주소를 직접 링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동의함.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각 음악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308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안전번호 제2020-73799호의 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379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인데,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증거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심의 요청되어 심의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0-73799호는 증거자료가 누락된 안전이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379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3090호~73798호, 제2020-73800호~7459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Adobe Illustrator CC 2015 ~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

면서)안건번호 제2020-7312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C' 2019 버전을 21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이 프로그램 2019 버전은 2018. 10. 10. 출시되었고, 저작권사인 '어도비시스템즈'는 홈페이지에서 7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음. 라이선스 이용료는 한 달에 37,400원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SW 'AutoCAD 2016 ~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14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AutoCAD' 2020 버전을 2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프로그램 2020 버전은 2019. 3.경 출시되었고, 저작권사인 'AutoCAD'는 홈페이지에서 30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이용료는 한 달에 268,400원, 1년에 2,160,620원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key generator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만화 '쿵후보이 친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33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쿵후보이 친미' 11~20 jpg 압축 파일을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만화는 2020. 2. 26. 총 15권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며, 권당 판매가는 9,000원임.

(음악 '주라주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391호는 가수 '둘째이모 김다비'가 실연한 음원 '주라주라'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음원은 2020. 5. 1. 발매되었음.

(음악 '응급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403호는 웹하드에서 가수 '임영웅'이 실연한 음원 '응급실'이 포함된 음원 mp3 압축 파일을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2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음원은 2020. 5. 27. 발매된 앨범 '뽕숭아학당 PART2'의 수록곡임. 이 앨범에는 'TV조선'에서

2020. 5. 13. 방영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에서 출연진이 부른 11곡이 수록되어 있음.

(영화 '코드 8'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564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코드 8'을 mkv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4. 15. 넷플릭스에서 공개하였고, 2020. 7. 2. 국내 극장 개봉하였으며, 2020. 7. 7. VOD 서비스를 시작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음.

(영화 '결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651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결백'을 187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6. 10. 개봉하였고, 2020. 7. 9.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0. 7. 17.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임.

(영화 '초미의 관심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806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초미의 관심사'를 1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2020. 5. 27. 개봉하여 2020. 6. 16. VOD 서비스를 시작했음.

(영화 '시,나리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94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1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7. 2. 개봉하였고, 2020. 7. 6. VOD 서비스를 시작했음.

(영화 '에베레스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990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에베레스트'를 1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의 출연배우는 장쯔이, 성룡 등으로 2020. 7. 22. 국내 개봉 예정이며, 중국에서는 2019. 9. 30. 개봉했음.

(게임 '플레비 퀘스트:더 크루세이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54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플레비 퀘스트:더 크루세이드'를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게임물은 2020. 4.

9. 출시되었고, 정식 판매가는 20,500원임.

심의위원들께서는 개인 PC로 심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의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73090호~73798호, 제2020-73800호~7459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0-73090호~73798호, 제2020-73800호~7459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3090호~73798호, 제2020-73800호~7459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0-73061호~73088호는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 공유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전번호 제2020-7379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73052호~73060호, 제2020-73089호, 제2020-73090호~73798호, 제2020-73800호~7459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6면부터 21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3844호~44240호, 제2020-44341호~45040호, 제2020-45140호~45339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44241호~44340호, 제2020-45041호~45139호는 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27.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권헌영

위원 박정인